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7-16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4구합7702 주민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5. 5. 12.
판 결 선 고	2015. 6. 2.

주 문

1. 피고가 2009. 8. 7.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주민세 1,044,030,7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7-16

가. [redacted]세무서장은 2009. 8. 7.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,437,701,270원을 결정·고지하면서 구 지방세법(2008. 2. 29.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1,044,030,170원(이하 '이 사건 주민세'라고 한다)을 함께 부과·고지하였고, 그 내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.

나. [redacted]세무서장은 2009. 8. 7.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이 사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그 고지서가 2009. 8. 13. 반송되었다. [redacted]세무서장은 위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2009. 8. 25.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여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였다. 그러나 [redacted]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.

다.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기한인 2009. 8. 31.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, 2009. 10. 16. 원고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주민세 1,087,879,990원을 독촉·고지하였으나 독촉장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2009. 11. 5.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4. 9. 2.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4. 12. 11. 원고의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 또는 [redacted]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7-16

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.

나. 판단

구 지방세법 제25조는 '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, 기한,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'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51조는 '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,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[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(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)를 말한다]에 송달한다.'고 규정하고 있다. 한편,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은 '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·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(소득세법 제81조, 제115조, 국세기본법 제47조,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,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)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.'고 규정하고, 같은 조 제5항은 '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·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.'고 규정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요한다 할 것이고,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부과된 세액 중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7-16

일부가 납부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(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986 판결 참조), 납부고지의 부존재는 그 징수절차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 등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다(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누17059 판결,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1누319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서 보건대, [redacted]세무서장이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부과·고지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부과·고지한 것으로 볼 것인데, 이 사건 주민세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었음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독촉·고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원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하였고, 원고가 2012. 11. 30. 이 사건 주민세 중 3백만 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에 따른 독촉 및 체납절차 또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고,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를 한 바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아니한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7-16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민석

판사 김선아

판사 조 실